
 <p>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</p>  <p>국토교통부</p>	<h1>보도자료</h1> <p>총 4매 (본문2, 참고2)</p>	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계획과		
		오수영 과장	02-2100-1155	
	이정명 사무관	02-2100-1158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
	김규철 과장	044-201-4733	최찬 사무관	044-201-3653

2018년 6월 8일(금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7.(목)
16:00 이후 보도가능

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, 국가균형발전 이끈다.

- 지역이 주도,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-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위원장 송재호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‘한국형 계획계약제도’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.
-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
-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,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.
-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,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- 균형위는 ‘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’(2.1) 이 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○ 또한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*(18.3)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*을 강화하였다.

* 제도정비: 계획계약 사업에 예산 우선지원 근거마련, 각 지자체별 혁신 협의회에서 사업 기획.제출 및 균형위(전문위원회) 심의.의결 등

□ 금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 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,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,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.

○ 본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,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'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'(18.5~19.1, 8개월):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 조사, 중앙부처-지자체별 역할 및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성과평가 방안,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

□ 이와 병행하여,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'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.

□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

“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계획과 이정명 사무관(☎ 02-2100-1158),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 찬 사무관(☎ 044-201-4733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운영체계 ['18.2.1,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] >



< '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시범사업 분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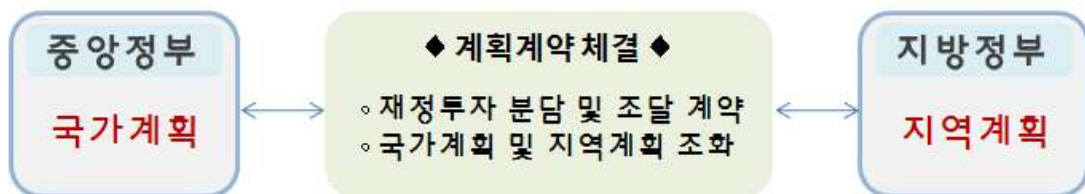
사업유형	시범사업 대상(안)
① 인구감소, 고령화 대응	- 고령화, 인구감소, 지방소멸, 보건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
② 일자리 창출 및 역사·문화자원 육성	- 신산업, 지역주력산업, 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- 지역 고유자원 특화, 브랜드 육성 및 문화관광 등
③ 지역간 협업 및 사회인프라 확충	- 기반정비, 시설확충, 현대화, 지역재생, 환경조성 및 개선 등
④ 기타 국정과제 부합	- 4차 산업혁명, 지역 안전 등에 관한 사업 및 계획

* 지역발전과 무관한 단순 지역현안사업과 전시성 지방사업 등은 제외

□ 운영개요

- (도입배경) 수도권(파리) 집중화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('82.)하며 지역개발수단으로 계획계약제도 본격 도입('84.)
- * 수도권(파리) 인구비율: 6.1%(224만명, 1851년) → 12.9%(534만명, 1911년) → 17.1%(732만명, 1954년) → 18.5%(1,007만명, 1982년)
- (운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레지옹 등)간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과 재정투자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(5~7년)에 걸쳐 시행
- (목표) 정부는 국가균형발전, 지방은 지역발전사업 추진
- (경위) '84년부터 6차례의 계획계약 체결(제6차 계획계약, '15.~'20.)

◆ 프랑스 계획계약체계



□ 실제사례: 국가 ↔ '노르-파드칼레' 레지옹간 체결계약 사례 ('07.~'13.)

- 계약주체 : 프랑스 중앙정부 ↔ 노르-파드칼레 레지옹
- 지원전략 : ① 지역경제촉진 ② 환경재생 및 자연유산 보존
③ 해당지역의 유럽 Hub化 ④ 지역적 매력 강화 ⑤ 평생교육
- 재정규모 : 약 3.5조원(7년간)

◆ 노르-파드칼레 레지옹 계획계약 사업계획

